

PyeongChang Disability Forum 2021
평창장애포럼 2021

대중교통 접근은 권리이다

존 워다치

March 10, 2021

The Basics 기본 규범

- 유엔장애인권리협약
 - 3조: 일반원칙: 비차별과 접근성
 - 2조: 적절한 편의공을 포함한 비차별
 - 9조: 도로, 건물,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접근성
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
 - 물리적 환경
 - 교통수단
 - 정보와 의사소통

교통의 원칙

- 통합적 지원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함. 민간/공공 교통 모두를 포함해야 함.
- 중앙정부와 장애인의 역할 중요
 - 건축/이동수단 접근성 기준 수립
 - 강력한 집행 강제 수단: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접근성 관련 민원을 수렴, 조사, 해결하는 체계와 접근성 소송 체계
 -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지원
 - 공공 정보 제공(기술 지원)
 - 장애이노이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역할 보장

미국장애인법

- 모든 종류의 공공/민자 교통수단 전체가 접근가능해야 함
 - 공영 교통수단: 시내버스, 보조적 교통수단(특별교통수단), 모든 철도(고속철도, 일반 열차, 지하철), 택시, 셔틀버스, 페리 등 해상 교통수단
 - 민영 교통수단: 시외 철도(그레이하운드, 메가버스 등), 민간 운영 셔틀(호텔 셔틀버스 등), 택시, 모노레일, 트램 등
 - 공공 기관에서 민간 위탁으로 교통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
- 모든 교통 관련 이슈들
 - 접근가능한 건물: 차량 디자인, 장애인 숙박 시설 규정, 모두에게 유효한 의사소통, 장애인 지원 동물(시각장애인 안내견 등), 접근가능한 웹사이트

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

- 신규 도입 교통수단이나 건물 신축/개조시 엄격한 기준 적용(예: 새로 도입하는 버스는 모두 접근가능해야 함)
-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도록 하기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함(Amtrak 사례)
- 건물 증축/개조시 기준 완화
- 연방정부의 강력한 집행 역할-법적 소송 등
-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재정 지원(시내 버스비용 80%를 연방정부에서 지원)
-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는 접근권 보장 촉구 법정 소송 가능

소송에 따른 조정안 합의 사례: 암트랙(Amtrak) 대 미 법무부 (2020년 12월)

- 전미여객철도공사(암트랙,Amtrak)은 46개주에서 500개의 철도를 운영하고 있음
- ADA 재정 당시(1990년) 암트랙이 20년 내(2010)에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함
- 미 법무부는 암트랙이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장애인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조사 수행-암트랙이 ADA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힘(2015년 6월 9일 조사보고서)
 - 법무부는 "압도적으로 많은" 철도역이 접근불가능하다고 판단
 - 개선 요구 및 암트랙과 협의 시작

암트랙 협의 조정안

- 위반 사항: 법무부가 찾아낸 ADA 위반 사항들
 - 주차장
 - 주차장에서 건물까지의 이동로
 - 건물 출입구
 - 대합실
 - 엘리베이터
 - 화장실
 - 표지판
 - 건물에서 승강장까지의 이동로
 - 승강장
 - 철길 건널목

More on Amtrak

- 암트랙에 대한 요구안
 - 기차역 신축시 접근성 완전 보장
 - 역내 판매자 및 계약체결 상대 모두에게 ADA준수 요구
 - 접근성 낮은 135개 역은 10년 내에 모두 완전한 접근가능하도록 개조하고, 장애인 승객이 많은 역부터 우선적으로 개조
 - 2013년부터 접근불가능 역 이용으로 인해 철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225만 달러(약 25억 원) 상당의 보상금 지급
 - 전직원 대상 적극적 장애인식 교육 시행
 - 접근성 미비 민원 수렴, 조사, 보고 체계 구축
 - 접근성 보장 책무 이행 및 법무부에 주기적 보고를 할 수 있는 적합 인력 고용

코드드와 미국 대 잭슨시와 잭슨시교통공사 사건(2010년 3월)

- 미국의 장애인단체인 '디스어빌리티 라이트츠 미시시피'가 제기한 소송에 미국정부 개입
- 정부는 소송에서 미시시피 장애인 연합 및 미시시피 시각장애인단체 대리 참여
- 소송 쟁점:
 - 시내버스 리프트 상시 운영 미비
 - 리프트 고장시 대체 교통수단 제공 미비
 - 직원 교육 미비로 인한 접근성 보장 기기 유지보수 미흡/'존중과 예의'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실패
 - 특별교통수단 미비

잭슨시교통공사의 개선안

- 시내버스 리프트 사용 및 고장난 리프트 모두 교체
- 직원 교육 및 일별 관리대장 작성 등 예방적 유지보수책 마련
- 버스 기사 교육: 휠체어 이용자 지원법, 정류장에 있는 장애인 그
냥 지나치지 않기, 존중하는 태도 갖기 등
- 향후 대책 요구안: ADA 감독관 지정, 교직원 교육, 효과적인 민원
처리 체계 구축, 개선안 대중 홍보 등

참고자료

- 협의 조정안 등 정보: 미 법무부 ADA 정보 페이지(ada.gov)
- 추가 자료:
 - 미 교통부 연방 교통국, transit.dot.gov ('Civil Rights/ADA' 섹션 참조)
 - 전국ADA네트워크, adata.org
- John L. Wodatch: jlwodatch@gmail.com